

경기도건축사복지회 회칙
2025.03.25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회는 경기도건축사복지회(이하 “이회”)라 한다.

제2조(목적) 이회는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돈독히 하고 복리를 증진시키며 경기도건축사복지회 회원의 업무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3.16. 개정)

제3조(사무소) ①이회의 사무소는 경기도 수원시 소재 건축사복지회관내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역별로 분회를 둘 수 있다.

②삭제

제4조(사업) ①이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사업체 또는 사업에 필요한 조직을 설립할 수 있다.

1. 재산 및 자산증식을 위한 수익사업
2. 회원연금제
3. 회원 업무지원사업
4. 회원 복리증진사업
5. 회원 경조사업
6. 삭제(2023.3.16.)
7. 기타 회원을 위한 사업

②사업조직의 설치, 운영, 구성 등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2017.11.8. 신설)

제5조(세칙 및 규칙) 이회 회칙에 따른 세부사항 또는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규칙 및 세칙, 운영규정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2024.3.28. 개정)

제 2 장 회 원

제6조(회원) 이회 회원은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건축사회 및 지역건축사회 정회원으로 로서 이회에 입회한 건축사로 한다.(2023.3.16. 개정)

제7조(자격) 회원은 회칙 제29조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의 자격을 갖게 되며 다음 각호의 사유발생시에는 자격이 상실된다.(2024.3.28. 개정)

1. 사망 또는 폐업
2. 타시·도 진출시
3. 제명처분시
4. 본인의 퇴회신청시
5. 회비 미납시
6. 경기도건축사회 자격상실(2024.3.28. 개정)

제8조(권리와 의무) ①이회 회원은 임원, 감사, 이회 대의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으며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반 권익과 혜택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다.
(2025.3.25. 개정)

②회칙 제37조에 의한 해산의 경우가 아니고는 현금 또는 자산, 부동산, 비품 등 모든 재산에 대하여 일체의 개인지분권리가 보장되지 않으며 지분을 청구할 수 없다.(2024.3.28. 개정)

③삭제 (2022.7.15 개정)

④이회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정해진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2023.3.16. 개정)

⑤삭제 (2022.7.15 개정)

제9조(회원의 임무) 회원은 건축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과당경쟁과 덤핑 등의 행위로 회원상호간에 불신과 과열경쟁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3 장 임 원

제10조(임원) 이회는 아래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인
2. 부회장 : 6인이내(2025.3.25.개정)
3. 운영위원 30인 이하 (2022.7.15 개정)
4. <삭 제>
5. 감사 : 2인

제10조의1(대의원)(2025.3.25.신설)

①대의원은 경기도건축사회 대의원으로 이회에 가입된자로 구성한다.(2025.3.25. 신설)

제11조(감사) ①삭제(2023.3.16.)

②감사는 이회의 서무, 회계 등 운영전반에 대한 정기 및 수시 감사를 실시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③삭제(13.3.14)

④이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위촉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임원선출)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회원의 동의를 받아 경기도건축사회에서 선출된 임원 및 대의원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2025.3.25. 개정)

제13조(임기) ①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그 밖의 임원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2023.3.16. 개정)

②회장의 임기는 당선된 다음해의 1월1일부터 업무를 개시한다.(2023.3.16. 신설)

제14조(직무) ①회장은 이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각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2024.3.28. 개정)

③운영위원회는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회의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④삭제(13.3.14)

⑤삭제(13.3.14)

제15조(임원의 책임) 임원은 제2조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단서삭제

제16조(임원의 보수) 임원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회를 위하여 봉사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수행상 필요한 비용은 지급할 수 있다.(2024.3.28. 개정)

제 4 장 총 회

제17조(회의) 삭제

제18조(설치 및 구성) ①이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2025.3.25. 개정)

③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④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9조(성원과 의결) ① 총회의 성원은 재적대의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성립되며 재적대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장의 불신임은 출석회원 3분의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2025.3.25. 개정)

②삭제(13.3.14)

제20조(의결사항) ①총회에서는 아래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제정 및 개정
2. 임원의 개선 및 불신임
3. 예산 및 결산승인
4. 이회의 해산(2024.3.28. 개정)
5. 회장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하는 사항
6. 기본자산의 설치 및 처분(신설)
7. 기타 회칙에서 정하는 사항

②총회에서는 회의소집 통지서에 기재된 안건과 재적대의원 3분의1 이상의 동의에 의하여 채택된 의안에 대하여 심의·의결 한다.(2025.3.25. 개정)

제20조의 2(회의록) ①의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 재적대의원 2인이상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2025.3.25.개정)

②제1항의 회의록은 다음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5 장 위 원 회(신설)

제21조(운영위원회) ①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②삭제 (2022.7.15 개정)

③감사는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제20조 제1항 7호의 기타회칙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은 총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2017.11.8.개정)

제21조의2(운영위원회의 성립, 의결 및 회의록) ①운영위원회는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운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칙개정에 대하여는 출석운영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의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출석 운영위원 2인이상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하며 다음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의 3(운영위원회 의결사항) ①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2024.3.28 개정)

1. 총회소집에 관한 사항
2. 총회에 부의할 의안
3. 회칙 제정 및 개정심의
4. 규칙 제정 및 개정심의
5. 사업계획 및 업무운영에 관한 의결
6.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 심의
7. 회원의 상벌에 관한 의결
8. 자산의 증식 및 처분에 관한 의결(2017.11.8. 개정)
9.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심의 및 의결
10. 이회 운영에 관련되는 제반사항의 심의 및 의결
11. 삭제(2024.3.28 개정)

제22조(위원회) ①이회는 각호의 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1. 자문회의
2. 기획위원회
3. 재정위원회(2023.3.16. 신설)
4. 윤리위원회(2023.3.16. 신설)
5. 선거관리위원회(2023.3.16. 신설)

②제1항에서 정한 위원회 이외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③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2024.3.28. 신설)

④위원장은 회장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2024.3.28. 신설)

⑤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2024.3.28. 개정)

⑥위원회 직무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한 회칙이 정하는바에 따른다.(2024.3.28. 개정)

제 6 장 사무기구

제23조(기구)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여 사무기구 및 직제를 설치할 수 있다.

제24조(직원) 이회의 사무를 위하여 필요한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제25조(직원의 직무) 직원은 회칙에 따라 회원에 대한 친절과 공정한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2024.3.28. 개정)

제26조(임면) 직원의 임용, 면직 등 인사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 7 장 재정 및 회계

제27조(재정) 이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회비 및 사업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1. 입회비
2. 운영회비 (2022.7.15 개정)
3. 수익사업 수입금
4. 회관임대료
5. 지원금
6. 찬조금 등 회비이외 수입금
7. 기타 수입금
8. 이외에 총회에서 정한 회비 (2022.7.15 신설)

제28조(회계) ①회계연도는 매년 단위로 1월1일부터 12월31일 까지로 한다.

②이회에는 별도의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제29조(회비) ①회비는 신규로 입회시 납부하는 입회비와 매월 납부되는 운영회비로 구분한다. (2022.7.15 개정)

②삭제 (2022.7.15 개정)

③제1항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30조(예산) 이회는 매 회계연도마다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31조(결산) 매회계연도마다 이회의 모든 재정이 포함된 결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2024.3.28. 개정)

제32조(재정충당) ①이회의 재정이 부족한 경우에는 회원의 회비를 증액하여 재정적자를 충당한다.

②이회의 재정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산에 대한 처분 등을 할 수 없다.

제33조(퇴회비) 삭제

제 8 장 상 별

제34조(상벌) ①회원이 회칙을 위반하거나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주의
2. 경고
3. 권리정지
4. 제명

②이회의 회비를 미납한 회원에 대해서는 경조비의 지급을 유보하거나 공제할 수 있으며 회칙에 정한 혜택을 제한할 수 있다.

③회원의 회비미납 등에 대한 권리정지, 제명 등의 징계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의한다.

④회원 및 직원이 이회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2024.3.28. 개정)

⑤미납회비는 회원이 이회에 지는 채무로서 납부지연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민법 또는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⑥미납회비의 정산은 이회에 퇴회신고서를 제출한 일까지로하고 제1항 제4호의 경우에는 제명처분일을 기준으로 한다.

⑦이회의 회원이 제27조 제2호의 운영회비를 미납하는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2022.7.15. 개정)

제35조(단핵) 삭제(13.3.14)

제36조(거부권) 회장은 총회이외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그 집행을 유보하거나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 9 장 해 산

제37조(해산) 이회는 법원의 파산선고 또는 천재지변의 경우가 아니고는 이회를 해산할 수 없다.(2024.3.28. 개정)

제38조(청산인) ①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이회가 해산이 결정된 경우에는 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청산방법 및 절차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39조(금지) ①이회는 제2조의 항구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칙 제8조 제2항, 제37조, 제39조는 어떠한 경우라도 개정할 수 없다.

②회칙 제8조 제2항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회칙에서 정한 사항이외에 개인별로 지분을 나누어 갖거나 분배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와 유사한 형태의 변칙적 개인별 분배도 금지한다.(2024.3.28. 개정)

제40조(개정) 삭제(13.3.14)

부 칙

이 회칙은 1983년4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회칙은 1984년12월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회칙은 1985년3월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회칙은 1985년11월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회칙은 1987년3월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회칙은 1988년3월9일부터 시행한다.

이 회칙은 1989년3월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회칙은 1989년10월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회칙은 1992년2월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회칙은 1993년2월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회칙은 1995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회칙은 1997년4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단, 복지회에 가입된 회원은 경기도건축사신용협동조합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회칙은 1998년3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회칙은 2000년3월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2001년6월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회칙 시행일 이전의 기존 경기도건축사회원은 2001.6.21.부터 기존 복지회원과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2002.3.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회칙 시행 당시의 회원에 대하여도 회칙 제29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이 회칙은 2003.3.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회칙 시행 당시의 종전의 이 회칙에 의한 처분절차 기타의 행위는 이회 회칙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2013.3.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회칙 시행일 현재 기존회원중 경기도건축사신협 미가입자에 대하여 회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단 미가입회원은 조속히 경기도건축사신협에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2017.1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2021.3.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2022.7.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2023.3.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2024.3.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2025.3.25.일부터 시행한다.